

부산지방법원 2022. 12. 8 선고 2022가단3000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인

담당변호사 조수정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우

변 론 종 결 2022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2. 12. 8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1. 11. 22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21. 11. 22. 접수 제150116호로 마친
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(가시번호 포함)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.

가. 원고는 2021. 10. 15. D에게 140,000,000원을 이율 연 12%, 변제기 2021. 12. 10.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이때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2021. 11. 22.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 소유의 1/2 지분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.)에 관하여 매매예약(이하 '이 사건 매매예약'이라 한다.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.

2. 판 단

C이 원고에 대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오규희

(별지)

부동산의 표시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부산 중구 E, F에 있는

주건축물G동

[도로명주소] 부산 중구 H

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2층 제1종근린생활시설

지1층 161.364㎡

1층 198.54㎡

2층 209.991㎡

3층 내지 4층 207.717㎡

5층 내지 12층 208.568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2층 1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183.244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부산 중구 E 대 274㎡

2. 부산 중구 F 대 4㎡

대지권의 종류 : 1,2.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1,2. 278분의 24.0803 끝.

